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한편,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양식시설물의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절차 마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신설)

- 철거한 시설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반환 요구 시 그 비용을 징수하거나 미요구 시 폐기·귀속** 등 처리절차 신설

* 보관·처리 : (1차) 공고(게시판·인터넷 등 / 14일) → (2차) 공고 후 소유자·사용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공고(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등)

** 반환·처분·귀속 : (반환요구) 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매각 등 소요비용 징수 →

(반환 미요구) 재공고 후 1개월이 지날 경우 폐기하거나 귀속(국가·지자체)

나. 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 규정(안 제43조의4 신설)

○ 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수중·표층에 대·지주·뜸·밭줄·

그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사업으로 규정

*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외해·내수면양식업 중 수하식·가두리식·혼합식에 해당(선박의

진로차단 등 안전사고 영향이 적거나 실효성이 낮은 바닥식·축제식·조방식은 제외)

다.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등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5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6. 00. ~ 2026. 07. 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양식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행정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양식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양식시설물이 변질 또는 파괴 등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경쟁입찰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의3(양식시설물의 반환과 귀속 등) ① 행정관청은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양식시설물(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양식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양식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양식시설물은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43조의4(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어업인)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양

식업을 말한다.

1. 영 제9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의 종류에서 수중·표층에 대·지주·
뜸·밧줄·그물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사업으로
해조류양식업 중 수하식양식업,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수하식 양식
업,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수하식양식업, 복합양식업 중 수하식
· 혼합(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경우에는 가두리
· 수하식 양식업에만 해당) 양식업, 외해양식업의 가두리·수하식
양식업,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수하식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2. 영 제29조에 따른 허가 양식업의 종류에서 육상등 내수양식업 중
그 밖의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제53조제2항 중 “실태조사의”를 “실태조사 및 제58조의2에 따른 명예감
시원의 위촉·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3조의2(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양식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행정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u>

<신 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양식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양식시설물이 변질 또는 파괴 등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경쟁입찰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의3(양식시설물의 반환과 귀속 등) ① 행정관청은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신 설>

양식시설물(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양식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양식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양식시설물은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43조의4(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어업인)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영 제9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

제5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2
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다.

③ ~ ⑤ (생략)

의 종류에서 수중·표층에 대·
지주·뜸·밭줄·그물 등을 이용
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하
는 사업으로 해조류양식업 중
수하식양식업,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수하식 양식업, 어류등
양식업 중 가두리·수하식양식
업, 복합양식업 중 수하식·혼
합(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복합
적으로 양식하는 경우에는 가
두리·수하식 양식업에만 해
당) 양식업, 외해양식업의 가
두리·수하식 양식업, 내수면양
식업 중 가두리·수하식 양식
업을 경영하는 자

2. 영 제29조에 따른 허가 양식
업의 종류에서 육상등 내수양
식업 중 그 밖의 내수양식업
을 경영하는 자

제5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실태조사 및 제58
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한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연 락 처	(051) 773 - 5614